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4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구자근・김선교・박준태

권영세 • 유상범 • 박형수

신동욱 • 조지연 • 김도읍

김석기 · 최수진 · 인요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 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 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 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 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
	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
	<u>할 수 있다.</u>